

## 상조 사업 운영 규정

제정 < 2020.01.03.>

개정 < 2021.12.23.>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세종교총’ 이라 한다) 정관 제4조 제2항에 준하여 회원 상호 간의 상호 부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조 사업)

상조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이 일반퇴직했을 때(일반퇴직이란, 타시도로 전출하거나 의원면직일 경우에 한함)
2. 회원이 명예퇴직했을 때
3. 회원이 정년퇴직했을 때
4. 회원이 사망했을 때
5. 회원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6. 회원 본인이 결혼할 때
7. 회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 제3조(부조금 지급 대상)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회원과 유족은 부조금을 지급받는다.

- ① 세종교총 회원가입 1년 이상자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
- ② 세종교총 회원가입 1년 이상인 회원 본인이 결혼할 때
- ③ 세종교총 회원가입 1년 이상의 회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 ④ 부조금의 신청 및 지급기한은 사안 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 ⑤ 개인 의사로 회원자격을 탈퇴한 자에 대한 부조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충남교총에서 세종교총으로 전입한 회원은 충남교총 상조 가입 연수를 가산한다.)
- ⑥ 사립학교 회원의 정년은 법 또는 학교 재단의 정관 및 규정에 대해 퇴직할 경우만 적용한다.  
(단, 사고 퇴직 및 본회 경조 규정에 대하여 정년퇴직 부조금을 지급 받은 회원은 제외한다.)

### 제4조(부조금의 구분)

부조금은 퇴직 시의 위로금과 사망 시의 조의금, 결혼·출산 시의 축하금으로 구분한다.

### 제5조(년수 계산)

- ① 년수는 첫 상조회비 납부일을 기준으로 만으로 계상한다.
- ② 월수 계상에 15일 이상은 1월로 하며 6월 이상은 1년으로 계상한다.
- ③ 회원가입 후 3개월 이상 회비납부를 중단하고 재가입할 경우 이전 가입 연수는 회원가입 연수로 계상하지 않는다.  
(단, 병역·육아휴직 후 재가입 시 휴직 기간을 제외한 회원가입 연수로 계상한다.)

- ④ 여러 가지 사정으로 회비가 연체된 회원은 2개월 내로 회비를 납부하여야 회원자격이 유지된다.
- ⑤ 사립학교의 경우는 가입년수 계산의 예외 사항으로 두며, 세종교총 가입 기간의 총 합을 지급년수로 계산한다. <개정 2021. 12. 23>

**제6조(부조금 각출)**

제3조에 대한 부조금은 세종교총 회비에 매월 1.000원씩 포함되어 각출한다.  
(단,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부조금 각출액을 증감할 수 있다.)

**제7조(부조금 지급 절차)**

- ① 제2조에 대한 부조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분회장은 세종교총 회장에게 보고한다.
- ② 세종교총 회장은 제3조에 의한 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제출서류)**

상조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서류를 구비 하여 보고한다.

- ① 부조 사안 보고서(명예, 정년, 사망, 배우자 사망, 결혼, 출산) 1부
- ② 일반퇴직회원 확인서(일반퇴직자에 한함) 1부
- ③ 사망: 기본증명서(사망자) 또는 사망확인서(진단서) 1부
- ④ 결혼: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사본) 1부
- ⑤ 출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⑥ 본인 은행 통장 사본 1부

**제9조(부조금 지급액)**

부조금 지급액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일반퇴직

부조금 불입년수	부조금 지급액	비고
5년 이상 10년 미만	50,00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000	
15년 이상 20년 미만	150,000	
20년 이상 30년 미만	200,000	

- 2. 명예퇴직(20년 이상이고 의원 면직자 포함) : 300,000원
- 3. 정년퇴직(20년 이상) : 300,000원
- 4. 회원 사망 : 300,000원
- 5. 배우자 사망 : 200,000원
- 6. 회원 본인 결혼 : 100,000원
- 7. 출산(회원 또는 배우자): 50,000원

**제10조(부조금 수령자)**

회원의 퇴직 시에는 본인에게 사망 시에는 회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순으로 지급한다.

**제11조(규정의 개폐)**

본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본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는 본 규정에 대하여 시행한다.

**부 칙(2021.12.23.)**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